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권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01
----------	-------

발의연월일 : 2025. 12. 12.

발 의 자 : 손명수·권영진·복기왕
윤종균·문진석·박용갑
염태영·맹성규·문정복
염태영·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하 ‘주40시간제’)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전업근무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전업근무 수준에 상응하는 고정급을 보장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임.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서울에서 우선 시행 중이나 코로나 시기 이후 택시 전업근로 기사가 감소하여 개별 사업장의 기사 확보가 어려워졌고, 주40시간제 미준수 사업장에 따른 제재수단도 부재하여 주40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례¹⁾가 다수 발생하고 있

1) '25년 서울시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조사에 따르면 서울 내 248개 법인사업장 중 98개 사에서 기준금 미달시 급여를 공제하여 전액관리제를 위반하고 있고, 조사 과정에서 주40시간 미만의 근로계약도 78개 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음.

한편, 서울 외의 지역에서도 2026년 8월 20일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나, 운송수입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에서도 온전히 정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서울 외 지역에 완전한 주40시간제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에 본 개정안은 주40시간제 시행지역 사업장의 전업근로 기사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주40시간제를 원만히 정착시키고자 사업장 내 일정비율의 예외를 허용하고,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을 신설하여, 주40시간제를 적용받는 운수종사자의 전업근무 및 이에 따른 고정급 등을 안정적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제도 시행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단서,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18조의2 신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면허대수의 100분의 40 이내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의2를 위반하는 경우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택시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8조”를 “제18조, 제18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 제18조의2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8년 8월 19일까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2028년 8월 20일 이후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적용지역의 확대에 대하여는 시행지역의 적용 성과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1. ~ 6. (생략)

② (생략)

<신설>

제20조(권한의 위임) ① 제16조 제2항, 제18조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2. ~ 7. (현행 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택시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같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① -----
----- 제18조, 제18조의2 -----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략)	----- -----. ② (현행과 같음)
---	--